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6일, 송언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2024.11.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11.27.) 상정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7차 국방위원회(2024.11.28.) 상정, 법률안심사소위원장 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언석 의원)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며 군사작전 및 군
사훈련 수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 동원,
그 밖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국가시책 사업 지

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손실을 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거나 직무수행의 적법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및 제50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직무수행 과정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한다는 규정은 경찰·소방은 이미 동일한 규정이 존재하고,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함.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 마련은 군사경찰 및 경찰·소방의 경우 손실보상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군인의 적극적인

직무수행 보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기간 등을 고려한 개정안 및 부칙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이 아니라 각 군에도 두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개정안 내용과 중복되며 동 법에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규정, 부정수급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징수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칙을 통해 삭제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

- [붙임]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이 아니라 각 군에도 두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개정안 내용과 중복되며 동 법에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규정, 부정수급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징수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칙을 통해 삭제하고자 함(안 제50조의2제3항 및 부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0조의2제3항 중 “국방부장관 소속으로”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안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45조의3(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군 사작전의 수행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난 대응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군인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인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제45조의3(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u>없는 때에는 그 정</u> <u>상을 참작하여 형</u> <u>사책임을 감경하거</u> <u>나 면제할 수 있다.</u> <u>제50조의2(손실보상)</u> <u>① 국가는 군인의</u> <u>적법한 직무수행으</u> <u>로 인하여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손실을</u> <u>입은 사람에 대하</u> <u>여 정당한 보상을</u> <u>하여야 한다.</u> <u>1. 손실발생의 원인</u> <u>에 대하여 책임이</u> <u>없는 사람이 생명</u> <u>· 신체 또는 재산</u> <u>상의 손실을 입은</u> <u>경우(손실발생의</u> <u>원인에 대하여 책</u> <u>임이 없는 사람이</u> <u>군인의 직무수행</u> <u>에 자발적으로 협</u> <u>조하거나 물건을</u> <u>제공하여 생명·</u> <u>신체 또는 재산상</u>	<u>제50조의2(손실보상)</u> <u>① (개정안과 같음)</u> <u>1. (개정안과 같음)</u>
---------------------------	--	---

	<u>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u> <u>2. 손실발생의 원인</u> <u>에 대하여 책임이</u> <u>있는 사람이 자신</u> <u>의 책임에 상응하</u> <u>는 정도를 초과하</u> <u>는 생명·신체 또</u> <u>는 재산상의 손실</u> <u>을 입은 경우</u> ② 제1항에 따른 <u>보상을 청구할 수</u> <u>있는 권리는 손실</u> <u>이 있음을 안 날부</u> <u>터 3년, 손실이 발</u> <u>생한 날부터 5년간</u> <u>행사하지 아니하면</u> <u>시효의 완성으로</u> <u>소멸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u>손실보상신청 사건</u> <u>을 심의하기 위하</u> <u>여 국방부장관 소</u> <u>속으로 손실보상심</u> <u>의위원회를 둔다.</u> ④ <u>합참의장, 각 군</u>	2.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u>손실보상신청 사건</u> <u>을 심의하기 위하</u> <u>여 손실보상심의위</u> <u>원회를 둔다.</u> ④ (개정안과 같음)
--	---	---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

⑤ (개정안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u>차 및 방법, 제3항</u> <u>에 따른 손실보상</u> <u>심의위원회의 구성</u> <u>및 운영, 제4항 및</u> <u>제5항에 따른 환수</u> <u>절차, 그 밖에 손실</u> <u>보상에 관하여 필</u> <u>요한 사항은 대통</u> <u>령령으로 정한다.</u>	
--	---	--

원 안	수 정 안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u> <u>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u> <u>한다.</u> <u>제2조(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u> <u>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u> <u>제5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u> <u>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u> <u>행 이후 군인의 적법한 직</u> <u>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u> <u>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u> <u>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u>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u> <u>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u> <u>다.</u> <u>제2조(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u> <u>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u> <u>(현행과 같음)</u>

<u><신 설></u>	<u>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u> <u>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u> <u>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u> <u>정한다.</u> <u>제17조를 삭제한다.</u>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35
----------	------

발의연월일 : 2024. 9. 6.

발 의 자 : 송언석 · 이종배 · 서지영

김상훈 · 김종양 · 김재섭

김위상 · 박준태 · 고동진

최은석 · 구자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며 군사작전 및 군사 훈련 수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 동원, 그 밖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국가시책 사업 지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손실을 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거나 직무수행의 적법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록 함으로써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및 제50조의2 신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군사작전의 수행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부대의 지원을 하는 중에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인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인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군인의 직무수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5조의3(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군사작전의 수행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부 대의 지원을 하는 중에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인이 그 위 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 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인의 직무수행이 불가피 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 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 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u><신 설></u>	제50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 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

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군인의 직무수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